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5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4. 6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4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4. 15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 개선(연가수해범위 확대)

3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산출방식)토록 함.
(안 제20조제2항)
$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}(\text{월})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안 제2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토요일 휴무제 도입과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수 없어 고충호소에 따른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개선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4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